

# 공중위생분야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

##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of Growth on Public Hygiene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최근 업소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외국계 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1~2인 규모의 영세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삶의 질 제고차원에서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는 이 분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화학약품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목욕장업, 숙박업 등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많아 안전 규제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욕외가격표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자격 및 면허발급 개선, 효율적 위생교육 실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각 제도마다 성공적인 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문제점 해결이 우선인데 자격시험 전면실시, 자격의 세분화, 타 업종과의 업무영역 갈등 해소, 전문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최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공중위생업소의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업소가 출현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분야이다. 공중위생은 식품, 환경, 산업보건 등과 같이 사회규제 차원의 관리분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규제가 있어야 하며 규제폐지 일변도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올바른 규

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제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상법이 아니라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하여야 할 법령이며, 더불어 공중위생분야의 건전한 발전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업소의 대부분은 1~2인이 경영하는 영세업소인데 반해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대형 외국계 미용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각 업종마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경영측면에서 과거처럼 국내 업체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외국계 대형업체와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관리측면에서는 이·미용분야, 목욕 및 세탁분야 등 대부분의 공중위생분야가 화학약품을 매개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와 업체의 안전 및 소비자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자격 및 면허제도, 위생교육 내실화 등등의 제도개선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이 고에서는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 시장 현황과 여러 제도별 문제점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각 업종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공중위생분야 시장 현황

<표 1>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중위생업종별 업소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미미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이용업소는 매년 1천여개 업소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용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은 미미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여 공중위생업종간에 부침을 보여주고 있다.

### 1) 기타(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 등) 분야

<표 2>에는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연도별 증감세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1. 연도별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단위: 년, 개소)

구분	계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2002년	202,409	32,680	10,087	32,180	86,878	35,360	5,224
2003년	195,088	33,270	9,997	29,845	82,896	33,998	5,082
2004년	192,685	33,642	9,845	28,196	82,207	33,311	5,484
2005년	191,294	33,031	9,502	26,904	81,663	34,279	5,915
2006년	189,944	32,658	9,315	25,566	81,585	34,139	6,681
2007년	188,199	31,913	9,146	24,308	81,781	33,650	7,401
2008년	187,538	31,563	8,852	23,189	82,551	33,233	8,150
2009년	192,994	31,130	8,627	22,334	89,017	32,900	8,986
2010년	198,164	30,867	8,446	21,739	95,194	32,262	9,656
2011년	201,180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재구성.

표 2. 연도별 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2002년	875	403	154	318
2003년	975	421	183	371
2004년	1,045	446	203	396
2005년	1,052	458	211	383
2006년	1,083	450	218	415
2007년	1,078	465	234	379
2008년	1,101	459	248	394
2009년	1,129	455	267	407
2010년	1,169	455	287	427
2011년	1,185	442	303	44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재구성.

2002년부터 변화 추이를 보면 세척제 제조업과 위생용품 제조업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생처리업은 200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공중위생서비스분야 가계소비 지출현황

<표 3>에는 공중위생업종별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현황과 1990년 대비 2011년

표 3. 공중위생서비스 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원, %)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90년 대비
가계지출(천원)	946.65	3,146.40	4,960.24	6,544.05	6,128.04	547.3
소비지출(천원)	6,311.91	9,847.67	8,673.51	4,798.16	4,648.69	-26.4
공중위생서비스 소계(원)	217,606.45	485,200.21	881,668.47	1,036,600.07	1,196,635.55	449.9
- 숙박	100,475.12	151,085.10	209,861.98	101,912.36	115,325.91	14.8
- 목욕	51,827.15	137,827.42	202,476.41	269,008.34	300,678.91	480.2
- 이·미용	7,937.35	34,817.88	149,741.88	291,062.52	346,341.85	4,263.4
- 기타 이·미용서비스	56,566.72	160,575.59	318,683.30	373,416.06	432,851.73	665.2
- 세탁요금 등(의복관련서비스)	800.11	894.22	904.91	1,200.79	1,437.15	79.6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990~2011), 각 연도별 통계자료 재분석(가구별 연단위 지출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12.10).

증감세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가계비가 1990년 대비 2011년에 547.3%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공중위생분야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의 증가폭은 449.9% 포인트로 전체 가계비 증가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이·미용 요금이 4,243.4%포인트로 가장 증가폭이 컸고, 반면에 세탁비의 증가폭이 79.6% 포인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증가폭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비로 14.8% 포인트로 나타났다.

즉, 숙박비의 경우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추세와 더불어 캠핑 등 새로운 숙박문화가 생기면서 기존 숙박업 사용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세탁업의 경우는 신소재 섬유류의 탄생, 세탁세제의 발전 등으로 세탁업 이용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이·미용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 고가 화장품 판매 급증, 그리고 스파 등 신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4. 공중위생분야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

#### (1) 개요 및 현황

옥외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

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외부에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업소에서 가격을 실내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업소 입장 전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실정에서 옥외 가격표시제도의 도입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업소 선택 및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가 가능하다. 2013년 1월부터 영업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 우선 적용한 후 다른 소규모 업소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옥외 요금 게시 항목은 이용업이 3종 이상, 미용업이 5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데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과태료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을 징수케 된다.

<표 4>에는 전국 이·미용업소의 면적 현황이 제시되어있는데 전체업소중 이용업소의 5%, 미용업소의 15%가 우선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허위가격 표시로 인한 민원 야기, 업소간 가격경쟁에 의한 서비스질 저하, 소규모 업소들의 도태 우려, 가격 표시시 항목 선정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소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

표 4. 전국 면적별 이·미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이용	미용
합계	118,690 (100%)	19,848 (100%)	98,842 (100%)
66㎡ 이상	15,928 ( 13%)	1,070 ( 5%)	14,858 ( 15%)
66㎡ 미만	95,462 ( 80%)	16,594 ( 84%)	78,868 ( 80%)
미입력	7,300 ( 6%)	2,184 ( 11%)	5,116 ( 5%)

표 5.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가격표시로 인한 민원 야기</li> <li>• 업소간 가격경쟁 야기로 서비스질 저하</li> <li>• 소규모 업소들의 도태 우려</li> <li>• 가격 표시 항목 선정 어려움</li> <li>•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업소반발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표시방법 다양성 확보 (지자체 홈페이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확보)</li> <li>• 행정처분 완화(과태료 50만원→20만원)</li> <li>•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만 적용(인센티브 부여)</li> </ul>

격표시방법 다양성 확보(지자체 홈페이지에 세부가격 고시 등),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관련 단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확보), 행정처분 완화(과태료 50만원→20만원),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만 적용(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같이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찬성하는 제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제도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제도

### (1) 개요 및 현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근거하여 각 공중위생업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평가항목 및 평가매뉴얼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통합평가의 보건위생분야에 1개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sup>1)</sup>.

에당초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

1) 세종시 출범으로 현재는 17개 시도이나 아직 세종시는 평가를 실시 한적이 없음.

어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 불발로 지원이 없다가보니 지자체마다 평가실시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표 6>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이 제시되어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지만 업종별로는 거의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있는 실정으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 방법 및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여부이다.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로 평가받은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업소는 결과 공표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평가사업이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다보니 평가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위생서비스보다는 시설평가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개선과 민원 발생업소, 행정처벌 업소 등에 대한 감점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 생활숙박업 등 관리

### (1) 개요 및 현황

2012년 1월 장기 투숙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생활숙박업' 업종이 신설되었다.

2012년말 현재 전국 숙박업소 30,447개소 중 3.9%인 1,176개소가 취사시설을 갖추어 놓은 생활숙박업소로 국민들의 다양한 숙박 수요를

**표 6.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서비스평가대상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실효성 없음</li> <li>- 서비스평가보다는 시설평가에 치우치는 경향(신규업소에 유리)</li> </ul> </li> <li>• 평가주기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평가 시행연도 불규칙</li> </ul> </li> <li>• 위생서비스평가결과 활용 및 효과적인 지원 방법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실시에 따른 자체 예산 확보애로</li> <li>- 위생서비스평가 배점 형평성</li> </ul> </li> <li>• 위생서비스평가결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서비스평가결과를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공표할 경우 최우수업소를 제외한 업주들의 반발 및 민원발생 우려</li> </ul> </li> <li>• 서비스평가 항목에 민원발생업소, 횡수 등에 대한 평가감점 제도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li> <li>• 위생서비스평가 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평가 요원 전문성 확보</li> <li>• 자체예산 확보로 최우수업소의 인센티브 제공 (표지판제작, 홍보물 등)</li> <li>• 점수 배점 조정(시설, 서비스 등) 및 위생관리용역업은 평가업종에서 제외</li> <li>• 최우수 업소만 공표하여 업주들의 자율적 개선 의지 유도 및 업주들의 반발 최소화</li> <li>• 서비스평가 항목에 감점제도 신설 및 감점 점수 표기화</li> </ul>

충족시키고 있지만 생활숙박업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 동 업종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 되었다.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숙박업에 대한 정의, 영업범위 등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현재 일반 숙박업, 고시원 등과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취사를 할 수 있어 화재 발생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업 신고시 반드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필증’ 및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투숙에 따른 요금정산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가격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첫 계약시 제시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표 7. 생활숙박업 등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중 일부만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일반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생활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구분 모호</li> <li>• 생활숙박업소에서 장기(1월 이상)투숙하는 손님 경우 자유업인 원룸, 고시원 등과 차별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로 대법원은 1월 미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숙박업의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생활숙박’ 용어 자체가 장기투숙의 가능성을 내포</li> </ul> </li> <li>• 현행 생활숙박업 위생관리 기준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 법에는 (숙박업)영업 신고서 제출서류에 가스 등 관련설비 신고서 제출 규정이 없음</li> <li>• ‘생활숙박업’은 요금표 게시를 함에 있어 1일 0원, 2일 0원, ...30일 금액 등 일자마다 각각 표시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중 일부만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활숙박’, ‘일반숙박’ 업종 구분에 혼동을 초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혼합숙박’ 업종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생활숙박업 업종을 폐지하고 숙박영업자 위생관리기준[별표4]을 다음과 같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영업장 또는 객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해당하는 경우)”}</li> </ul> </li> <li>• ‘생활숙박’ 업종 폐지가 곤란한 경우 업종 명칭을 ‘취사 숙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용어 자체가 장기 체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취사가 가능함을 뜻하는 ‘취사숙박’으로 명칭 변경</li> </ul> </li> <li>• 숙박업 포함 공중위생영업과 요금표 게시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정에는 요금표 게시의무만 있고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았을 경우 처분조항이 없으므로 실제 받는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규정 신설</li> </ul> </li> <li>• (생활숙박업)영업신고서 [별지1호서식] 중 신고자 제출서류 보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사시설이 있는 생활숙박은 대형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점 신고할 때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필증’, ‘소방시설완비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li> </ul> </li> </ul>

#### 4)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

####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 (1) 개요 및 현황

<표 8>에는 이미용사 자격 및 면허취득 현황이 연도별로 제시되어있다.

2008년부터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분리되면서 미용사(일반)과 피부미용사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다.

현재 미용업 면허증은 학교 졸업장이나 국가 기술자격증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즉, 타 분야와는 달리 국가자격없이도 면허를 받아 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있다.

<표 9>에 공중위생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자격과 면허의 이원화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어렵고, 자격시험없이 업소개설이 가능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자격증없이도 면허자의 감독이 있는 경우에 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 분야의 질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격검증을 위한 소정의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표 8. 이·미용사 자격 및 면허 취득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사		미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합계	4,261	2,736	27,524	38,527	51,318	14,699	100,418	18,917
2006년	803	527	14,252	7,813	-	-	-	-
2007년	615	610	13,272	10,355	-	-	-	-
2008년	653	205	-	6,489	11,967	2,751	23,173	93
2009년	747	515	-	5,392	12,996	3,664	32,379	7,456
2010년	699	508	-	5,287	13,231	4,045	24,862	6,473
2011년	744	371	-	3,191	13,124	4,239	20,004	4,895

표 9.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제도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자격관리의 어려움</li> <li>• 기존 면허증 발급시 검토사항 (금치산자 조회 및 건강진단서) 확인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분을 같음하여 자격소지자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li> <li>• 영업신고시 금치산자 조회, 건강진단서첨부 등의 규정을 법으로 명시</li> </ul>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5)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 (1) 개요 및 현황

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에는 “매년 3시간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중위생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사정으로 1개월 또는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사후교육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표 10>에는 현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있다.

미용분야 위생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의 전문화가 미비한데 특히 네일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내용이 없어 해당분야 피교육자의 불만이 높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네일 자격 분리를 결정한 바 있어 향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생교육 제도 개선시 마다 매번 지적되지만 위생교육시 당초 목적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교육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특정 물품의 선전과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폐업주 동일한 업종에서 재영업을 할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교육을 과거 위생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 신규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용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을 세분화시켜 피교육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향후 미용(종합)이라는 자격을 폐지하고 피부와 일반으로 양분시켜야 할 것이다.

표 10.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신고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신고 할 경우 위생교육 중복이수 발생</li> <li>• 위생교육 시간 내 물품판매로 인한 교육취지 저해</li> <li>• 신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일정상 6개월 이내 이수가 어려움</li> <li>• 네일 위주의 미용업(일반)은 위생교육 참여시 네일 관련 교육 내용이 없음.</li> <li>• 미용업(종합) 영업주의 경우 피부와 일반 중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할지 불명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영업한 신고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신규위생교육 제외(단,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li> <li>• 인터넷 교육활성화를 통하여 물품판매 등 현장교육에서의 문제점 해결</li> <li>• 신규교육을 폐지하고 기존 영업주교육으로 대체</li> <li>• 사이버교육과목을 일반/피부/네일로 세분화한 교육실시로 불만 해소</li> <li>• 미용업(종합)을 폐지하고 일반/피부으로 업종을 조정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li> </ul>

그리고 현재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터넷 교육이 실시중에 있다. 인터넷 교육은 이동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장 교육시 이루어지는 물품판매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 교육은 교육내용, 대상에 따라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인터넷 교육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 1) 기본방향

<표 11>에는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우선 공중위생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삶의 질 차원에서 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관리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치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신종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와 기존 업종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또한 공중위생분야는 식품, 환경 등과 함께 안전관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규제를 적정하게 강화하면 절차적 규제 등은 완화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뷰티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은 자칫 타 공중위생업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업종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겠다. 더불어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강화는 조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표 11.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방향

- 공중위생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 위생 및 안전분야 규제 합리화
  - 규제 강화, 완화, 신설, 폐지
-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강화(조직, 예산 및 인력 등)
- 새로운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영업범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지침 제개정
- 전 공중위생업종의 균형적 발전
  - 뷰티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전 공중위생업종에 균형적으로 확산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의 내실화
- 기존 영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 각 업종별 발전방안

#### (1) 숙박업

2011년 가계지출 현황에서도 분석되어 있듯이(표 3 참조) 지난 10년간 숙박업의 영업 성장세를 보면 공중위생업종중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여러 원인중 으뜸은 숙박업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숙박업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공중위생법상 타 업종인 목욕장업의 찜질방 영업을 숙박업의 숙박기능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고, 또한 펜션, 게스트 하우스 등의 행태로 미신고 유사숙박업이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숙박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는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 숙박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즉, 유사숙박업과 숙박업간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숙박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목욕장업

숫가마 찜질방 등이 현재 목욕장업의 한 형태로 관리되고, 신고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업소의 미신고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불법영업소에 대한 제도권내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업종의 영업이익 등과도 직결되지만 나아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해당업종의 현안이기도 하다.

타 업종과 달리 수질오염, 화재, 화상,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히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3) 미용업

현재 성장세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시설 개보수가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즉, 미용업과의 경쟁에서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용이 줄어들어 향후 시장세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과거 퇴폐업소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건전한 업소로 운영하여야만 젊은 층 등의 업소 이용이 증가하리라 사료된다.

### (4) 미용업

피부미용분야가 미용업에서 자격분리되면서 메이크업, 네일 등 기존 미용분야의 자격분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발관리, 두피관리 등의 자격 세분화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네일분야의 자격분리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최근 피부미용분야 자격이 분리되어 독립분야로 자격시험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면허 등도 분리되어 미용의 한분야로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분야의 세분화도 시장 규모, 독립 여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 언급되었지만 미용분야는 자격 및 면허발급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이나 피부미용 모두 자격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즉, 자격시험 없는 면허발급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헤어 분야는 현재도 국제경쟁력이 있으므로 피부분야 등 타 분야와의 업무영역 다툼보다는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5) 피부미용업

기 자격이 분리된 상태에서 면허도 분리, 신설됨이 필요하다.

현재 피부미용분야는 의료계인 피부과와 업무 범위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이다. 그리고 현재 피부미용업의 전체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실태 자료가 없어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피부미용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일부 업체의 타 분야 업무영역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데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되는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세탁업

세탁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배출된 인력의 적정 활용을 위해 세탁기능사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향후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세탁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전문성있는 인력의 세탁소 운영으로 최근 회수건조기에 의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세탁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에게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공장형 대형 세탁소의 출현에 의한 세탁 편의점 등이 나타나 실제 업소에서 세탁을 하지 않는 업소와 세탁을 직접하는 업소로 구별되고 있어 이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세탁을 하지 않는 세탁편의점도 세탁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6. 맺으며

여지껏 새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규제완화 대상은 공중위생분야이었다. 지난 MB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공중위생분야의 법적 관리근거인 공중위생관리법의 폐지까지 검토된 바 있었다. 공중위생분야에는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영세한 우리나라 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뷰티산업이라해서 미용, 피부미용분야에 국한하여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박람회 개최 및 참여외에는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필요하다.

여전히 타 분야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미흡 및 정부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투자대비 발전 가능성은 더 클 수 있다. 또한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 분야가 될 수 있기에 향후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